



새로워진 싸이월드 앱.

새로워진 싸이월드 앱에서 당신의 오늘을 이어가세요.
매일매일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해집니다.



쉽고 다양한 기능으로 오늘을 이야기하기

음악, 기분, 장소로 소중한 순간을 쉽게 이어가는 NOW
싸이월드의 새로운 소통 방법 **흔들기**
말보다 더 생생한 나만의 댓글 노하우 **액티콘**
음악으로 당신을 어필하고 싶을 때 **BGM**



지금 티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싸이월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나보세요.



KISO

JOURNAL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 기획동향 |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 법제동향 |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 이용자 섹션 |

포털의 대선 특집 서비스 비교분석
사이버불링의 현황과 과제

| 학술탐방 |

정보사회학회 활동 소개

| 서평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잊혀질 권리

| KISO NEWS |

2012
Vol.09

KISO JOURNAL

2012 Vol. 9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황용석
- 기획동향 ●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권현영
- 법제동향 ●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황창근
- 이용자 섹션 ● **포털의 대선 특집 서비스 비교분석**
장우영
사이버불링의 현황과 과제
조희정
- 학술탐방 ● **정보사회학회 활동 소개**
배 영
- 서평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박준석
잊혀질 권리
황호영
- KISO NEWS ● KISO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ONTENTS

편집위원

위원장/ 황용석 교수_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현영 교수_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_국회 입법조사처
박준석 팀장_Daum고객서비스기획팀
오근숙 과장_NHN 정책실
이원태 박사_KISDI 미래융합연구실
대해진 팀장_SK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황창근 교수_홍익대 법학과

저널제9호

발행일 2012.12.17.
발행인 김상현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자인 깃털물고기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1-9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2호
대표전화 02-563-4955
이메일 kiso@kiso.or.kr

KISO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을 통해 주요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관련 이슈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해당 정책결정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리뷰를 담아보았다.



황용석 교수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리뷰

1. 개인화 검색서비스기술의 특성

KISO 정책결정 제15호인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은 개인화 검색 서비스의 중요 운영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정책이다. 그동안 웹의 방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검색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1990년대 야후가 주도했던 인덱스형 검색서비스는 구조화된 주제목록을 보여줘서 이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정보량이 보다 방대해지면서, 웹 검색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서 이것이 들어간 문서를 추출하는 키워드형 검색엔진으로 발전했다.

키워드 검색엔진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검색 연산자를 활용한 고급검색기법들이 소개되었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검색엔진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사의 고유한 검색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이용자들이 인지적으로 용이하게 검색결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관검색어와 같은 부가 서비스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역시 이러한 부가서비스의 하나이다. 이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이 입력한 과거 검색어 자료를 분석해서 특정 검색어와 상호 긴밀히 연관된 검색어를 검색 입력창 또는 그 인접영역에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색엔진별로 서비스 양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서비스 특성에 기반해서 정의 내려 본다면, 연관검색어는 특정 키워드와 공통되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검색어 목록을 검색창 또는 그 인접영역에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의 입력이 끝나기 전에 그 입력한 문자열을 포함한 검색어 리스트를 자동으로 제시하여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기능이다. 본질적으로 이 두 서비스는 동일한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유사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연관검색어로 통일해서 불러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검색 서비스 관점에서 연관검색어는 개인화검색 서비스에 해당된다. 개인화검색이란 이용자의 관심을 보다 빠르게 반영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색행동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추천형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화서비스에는 다양한 기술적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웹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색결과를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시멘틱웹 검색',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패턴이나 관심 주제를 판단해서 검색효율을 증대시켜 주는 서비스인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검색', 이용자가 웹에서 보고 있는 문서의 특징을 추출해서 관심분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어를 추천하여 검색범위를 확장시키는 '웹 페이지를 이용한 개인화 검색', 그리고 검색어를 자동적으로 확장시켜 주는 '쿼리 확장방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관검색어는 쿼리확장방식을 의미한다. 쿼리확장방식이 작동되는 구조 역시 다양하다. 사용자가 처음 입력한 검색어를 주제범주별로 제시한다거나,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을 통해 이전에 방문했던 웹상의 문서들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단어추출기법을 사용하거나, 동의어나 관련어 어휘사전인 시소러스(thesaurus)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빈도로 추출되는 검색어를 클러스터링(clustering)하는 방식 등이 있다. 클러스터링은 검색어가 동시출현하는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를 측정하고 색인어간 유사도(analogous map)를 측정하여 검색어와 유사한 용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연관검색어가 구현되는 알고리즘은 개별 검색사업자의 상품경쟁요소로서 사별로 차이가 크다. 동시출현하는 검색어의 발생빈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검색어를 결합시키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입력한 방대한 정보(입력 검색어에서부터 웹문서상의 메타데이터까지)를 분석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는 설계된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인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람에 의한 필터링이나 편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동화된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별 키워드에 대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정책결정의 배경과 내용

정책결정 제15호는 이러한 연관검색어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구제요청에 대한 처리방안을 담고 있다. 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앞서 언급한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검색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수의 대중에게 특정 검색어를 노출시키는 인지적이고 태도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관검색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도 실제로 나타난바 있다.¹⁾

또한 사회 일부에서 포털서비스의 의제설정기능과 관련하여 연관검색어서비스를 의도적 영향력 행사와 연결지어 바라보고 있다. 지난 9월 네이버의 연관검색어였던 '안철수 룬싸롱'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KISO는 연관검색어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투명한 운영원칙을 공개하기 위해 이 정책결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정책결정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정책결정 제9호인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선거기간¹⁾ 중에 국민은 자신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그 예외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결정 제15호는 선거라는 특수시점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운영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 연관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정의

이번 정책결정에서는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용자 편의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결정문에는 이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보이용을 촉진시키는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남용 가능성, 불법 및 유해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적시함으로써 이 서비스의 고유한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나. 연관검색어의 인위적 생성 및 변경금지를 원칙으로 함

정책결정은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연관검색어가 갖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연관검색어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행동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되는 검색어의 순서나 추천검색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특정 용어를 검색어로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자의적 배치’ 또는 ‘편집’행위로서 이 서비스의 기본 작동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즉 연관검색어는 이용자의 행동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편향성이 작동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인위적 생성이나 변경을 금지시킴으로써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연관검색어 제외 및 삭제에 대한 예외조항 제시

정책결정 제15호는 원칙적으로 연관검색어가 제외 및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후, 그 예외조항을 제시하여 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된 예외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적용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게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후보를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이다.

〈연관검색어 제외 및 삭제에 대한 예외조항〉

-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하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위의 7개 조항은 연관검색어의 제외 및 삭제를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유해성이 비교적 명확한 검색어로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결정 제15호의 예외조항은 정책결정 제9호보다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제9호에서는 선거 후보 및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즉,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국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으려 하는 자로서 일반시민과 다른 한시적 공인으로 간주해서 공직선거법상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면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은 보다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거에 근거해 있다.

한시적 시점에 적용되는 제9호와 다르게 제15호는 연관검색어에 대한 일반운영원칙으로서 불법의 영역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불법의 영역으로 >개인정보침해,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는 사생활침해 및 허위에 근거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사법부의 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 및 결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 품질 및 사회적 유해성 관점에서 >오타와 욕설, >상업적 오용 등이 포함된다.

제15호의 7개 조항 가운데 명시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2개 조항은 부정확한 정보(오타), 사회적 유해(욕설)와 상업적 어부징과 같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정은 불법적인 내용을 배제하는 가운데 최대한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관련 이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3. 정책결정의 의의와 과제

이번 정책결정을 통해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각

사의 고유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를 생성·변경할 뿐, 인위적으로 생성, 변경하지 않으며,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동안 회원사별로 약간씩 달랐던 연관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기준이 이번 결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인터넷자율규제의 범위를 게시물심의에서 검색서비스영역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KISO는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심의 및 피해구제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털서비스 영역으로 그 역할을 넓힘으로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기능이 보다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실제 심의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연관검색어는 쿼리 또는 질의어로서 하나의 용어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검색어는 의미가 생성되기 위한 최소단위로서 검색어 조합 자체만으로 명확한 불법성을 띠는 경우는 그 용어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물에 해당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온 연관검색어를 심의함에 있어서 검색어 자체 보다는 검색어와 연관된 게시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그 맥락성을 어느정도까지 판단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피해구제 차원에서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자율규제 활동은 게시물 심의의 임시조치절차처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를 통해 심의가 개시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지만 연관검색어에 대한 삭제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물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다. 검색개인화서비스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연상작용을 통해 검색경로를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관검색어로 인한 피해구제는 법률적 문제라기보다 포털사의 대책의 영역 즉, 자율적으로 책임을 구현하는 자유결정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연관검색어가 갖는 기술적 특성,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나 이슈를 인지시킨다는 장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라는 이질적인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포털의 자율규제활동에서 책무의 폭과 깊이를 구현하는 큰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KISO 제9호



오는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를 고려하여, 주요 대선 후보자의 인터넷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는 공간을 마련했다. 본문에서는 한국인터넷포럼에서 각 후보 캠프에 보낸 공개질의서와 그에 대한 공식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어떤 후보가 인터넷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각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권 현 영 교수
광운대학교
법학과
(한국인터넷포럼운영위원)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1. 들어가는 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후보 당사자와 정당 및 선거캠프 등에서는 막바지 득표활동이 분주하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선거와 같이 진보와 보수가 박빙의 구도로 맞붙는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바람몰이에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세몰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성공적 선거를 위하여 네티즌들은 더욱 냉정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성숙한 네티즌 유권자를 위하여, 한국인터넷포럼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캠프에 인터넷정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공식답변을 받았다. 질의와 답변은 모두 5개 분야 1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www.koif.kr)에서 전문과 비교자료를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포럼에서 질의한 인터넷정책 분야는 ① 인터넷경제 및 산업정책, ② 일자리 창출 정책, ③ 인터넷 정부, ④ 인터넷 문화 및 교육, ⑤ 인터넷 정책추진전략 및 체계 등 다섯 가지다.

세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었으나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인터넷 정책을 간략히 비교·분석하고자 한다.¹⁾

2. 인터넷 경제 및 산업정책

가. 인터넷경제에 대한 인식

세계 1등 수준의 인터넷인프라를 갖춘 한국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박근혜 후보는 ICT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터넷산업의 잠재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은 산업혁신과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무한”하다고 평가하여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후 정책방향으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글로벌 인터넷기업 육성과 중견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생태계 환경조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인터넷규제를 비판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실효성 없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나. 인터넷경제 중심의 산업성장 정책

한국인터넷포럼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중심의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인터넷경제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 아래 인터넷 경제형 산업구조로 성장시킬 정책수단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한국이 인터넷 경제형 산업구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CT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수직통합형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수평 모듈형 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정책은 인터넷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트워크, 하드웨어 등 인터넷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더불어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하고 이 지원관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책과 부처간 조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인터넷경제 원동력 : 인터넷기업 육성과 1인기업 활성화 정책

박근혜 후보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육성과 1인 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는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생태계는 정부정책에 의하기보다 기업간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진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하여 특정방향의 정부의 인위적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약으로 ① 인터넷 중립성, ② ‘기술거래소’ 설치로 창조기업 기술 보호, ③

1)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koif.kr)에서는 세 후보의 상세한 정책 내용을 전문 그대로 모두 볼 수 있으며 질문목록 항목을 나누어 각 후보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분야 고급인력 양성, ④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위해 모태펀드를 2조원 규모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신생기업 전용 모태펀드 2조원 규모 조성으로 인터넷 창업 활성화 지원을 계획한다고 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자금 조달, 창업관련 법률 및 마케팅지원 등 창업솔루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라. 글로벌인터넷콘텐츠 산업 전략

박근혜 후보는 세계 인터넷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① 종래 네트워크 인프라, 단말기기기를 강조하는 사고에서 서비스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고 ② '기업주도형 인터넷 멀티 캠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③ 공정경쟁 정책으로 생태계 구성원 간 경쟁과 협력 유도,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를 통해 창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 인터넷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국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국내 기업의 국내 시장에서의 역할별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기업의 콘텐츠 기획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분야	질문	후보별 답변 주요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인터넷 경제/ 산업	세계 1등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한국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잠재적 경제가치 높음 평가, 인터넷 서비스 활용가치 강조	한국의 인터넷 경제규모 높음 평가,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하여 성장 독려
	한국의 경제구조가 인터넷 경제형 산업구조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수단	제조업 중심→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인터넷 생태계 구축 위한 정책 필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 · 지원
	인터넷 경제의 원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추기업과 1인기업을 위한 경쟁 ·협력 조성 정책 실시	인터넷 창업 활성화 지원
	세계인터넷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산업전략	서비스 강조 인력양성 창조기업 경쟁력 강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로 기업간 역할별 해소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기업의 콘텐츠 기획의 역량 강화 위한 지원

3. 일자리 창출 정책

2012년 대통령선거의 핵심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이다. 인터넷 산업이 20대부터 40대까지를 아우르는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질의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시장밀착형 인터넷 기술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주도의 '인터넷 멀티캠퍼스'를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교육 이수를 위한 '인터넷 교육 바우처'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40대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IT활용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교육을 통해 창업, 경력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창업절차 간소화, 엔젤투자 활성화, 투자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실패자의 구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20-40세대들이 향후 인터넷 경제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스마트 워크, 스마트 진료, 스마트 교육 부문에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생협력지수제도화, 대기업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정부/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조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해 ICT분야 중견기업이 많아지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분야	질문	후보별 답변 주요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일자리 창출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고 인터넷 산업과 경제에 밝은 204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시장밀착형 인터넷 기술 및 전문 교육 실시 - 기업주도 인터넷멀티캠퍼스 및 교육바우처 - 40대 맞춤형 아카데미	인터넷 벤처창업 지원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주도 - 창업실패자 구제책 마련 - 스마트 워크, 스마트 진료, 스마트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 상생협력지수제도화 등 상생기반 일자리 창출

4. 인터넷 정부

가. 전자정부 대통령 중점과제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이다. 세계의 모든 개도국이 한국의 전자정부와 IT정책을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질적 성장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정부서비스의 혁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우리 전자정부가 새로운 정책기획과 개발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①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신뢰정부 구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의 제정으로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반 마련, ② 정부 내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간, 부처 내 협업 활성화 유도로 업무 효율성 제고, ③ 정부와 민간 협업 확대, ④ 정부에서 생성되는 업무·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개인별, 기관별 구축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책역량 강화, ⑤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장애인, 육아 등 수혜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과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룬 행정기관의 내부 행정프로세스 시스템화와 참여정부의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실질화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소통 및 정치개혁, 시민사회서비스 개발 정책

인터넷이 실질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국민소통과 개혁 및 시민적 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질의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내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으로 협업일터를 제공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 기업과 일반국민에게 개방하여 정책과정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에 주력한다면 이미 갖추어진 전자정부 인프라로 소통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온라인 정책여론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방 및 공유

인터넷 경제와 사회에서는 콘텐츠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공공정보를 콘텐츠 산업의 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디지털 공공정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정보산업의 진흥과 일자리 창출 선도를 위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개방 대상정보의 선정은 선별허용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아닌 개방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을 지향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추진할 것이며, 일단 개방된 정보는 누구든 표준화된 방식으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Open API)으로 개방할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분야	질문	후보별 답변 주요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인터넷 정부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역대 정부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이 중점두어야 할 정책과제는?	① 공공정보 개방 ② 정부 내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③ 정부와 민간 협업 확대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실질화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구축
	인터넷을 통한 국민소통과 정치개혁, 시민사회인터넷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정책	정부와 민간의 협업 강화 정부내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과 개방으로 정책과정에 의견 수렴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정책여론조사 등을 추진
	디지털 공공정보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공공정보 활용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제정	디지털공공정보 공개와 활용

5. 인터넷 문화 및 교육

인터넷문화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결정한다. 우리의 인터넷문화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문제는 인터넷문화를 선진적 역기능대처와 대중적 단기처방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문화와 개별 네티즌의 문화적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으로서의 인터넷 교육정책을 함께 물었다.

가. 인터넷 문화개선을 위한 정책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율 조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창작 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정부 민간 협력으로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주도 정책보다는 관련 업계와 이용자, 시민단체 등의 자율적 프로그램에 의해 정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면서, 다만 정부는 초중고 교육 과정에 인터넷 사용과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문화형성 여건 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문화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 스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나. 인터넷 다양성 대비 교육 및 인식개선 정책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 미디어 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이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대한 대책 마련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학교 정교 교육과정으로 인터넷 활용과 이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연령과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효율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 정책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정보격차는 물론 새로이 등장하는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의 차등적 보급률 해소, 미디어교육 실시를 통해 고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사회문화적 통합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다양성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정부주도의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분야	질문	후보별 답변 주요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인터넷 문화/ 교육	인터넷 문화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미디어 교육과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	자율적 프로그램 정착 인터넷 사용과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 교육 과정으로 포함
	인터넷의 다양성에 대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정책	인터넷 이용의 격차 해소 중점	학교 정교 교육과정으로 인터넷 활용과 이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포함
	인터넷을 통해 사회문화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정보격차 해소 위한 스마트 미디어의 차등적 보급률 해소	정부 주도 정책보다 자율 프로그램에 의존

6. 인터넷 정책추진전략 및 체계

마지막으로 인터넷정책 공약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체계에 대해 물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공약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는 체계와 틀을 갖추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인터넷 정책 분야에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및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로 귀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인터넷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다.

가. 대표 인터넷 정책 및 전략

인터넷 정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약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아우르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체계 확립, 선진적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을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산업정책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터넷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많은 나라, 인터넷 자유국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인터넷 정책 범국민 추진체계와 법제도

인터넷이 온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터넷이 표현매체라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가꾸어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ICT 정책 등을 통합할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고 핵심직무로 창조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CT전담부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표현의 자유 보장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통해 인터넷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인터넷정책 대통령 및 정부지원기능

인터넷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실 및 각 부처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의 진화 속에서 정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정운영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처를 연계할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온라인 소통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소통을 하려는 국정 책임자의 의지의 문제로 해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국민 인터넷 소통을 약속하였다.

분야	질문	후보별 답변 주요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인터넷 정책 추진체계 및 전략	인터넷 정책과 국가전략	공정경쟁 유도, 환경조성, 자율규제체계 확립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인터넷 정책을 논의할 범국민 추진체계와 제도도에 관한 구상	ICT 전담부처 설치	'인터넷 기본법' 제정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산업지원관 설치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 기능 및 총리실과 부처별 역할에 관한 구상	전 부처를 연계할 추진 주체 구성	대국민 인터넷 소통

7. 안철수 전 후보의 대표적 인터넷 공약

안철수 전 후보는 인터넷 정책에 관한 답변을 보낸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행보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 정책에 미치게 될 그의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략히 그의 구상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에는 구체적 내용과 기술적 전문성이 돋보이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차기 대통령이 인터넷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전 후보가 강조한 것은 설비중심에서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으로 ICT 관점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망중립성과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혁신서비스 제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과 인터넷기업의 시장질서 왜곡에 적극 규제외견을 제시하였다. 벤처 활성화와 글로벌 관점에서의 규제혁신도 주요 정책의 내용이다. 작은 가게에 IT서비스를 강화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평생 IT 교육센터' 전국 군단위 설치, 공공정보 원자료(raw data) 제공 등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이나 인터넷열린위원회 설치 등도 인터넷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8. 요약 및 평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인터넷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통령 후보들의 인터넷 정책은 대체로 지원정책에서는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서도 전문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행될 때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누가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조직방안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분야별로 그 구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다. 인터넷 정부분야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 추진체계 및 전략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구체적 판단은 역시 유권자 본인의 몫이다.

양 진영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원정책이 '나'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여부와 규제 부분에서 누가 더 인터넷의 자율, 개방, 공유와 혁신의 정신을 옹호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또 한 가지 인터넷분야에 집중하고 인터넷 중심의 경제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ICT정책의 틀 내에서 인터넷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터넷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진일보한 세력을 구분해 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국인터넷포럼이 '인터넷스러운 인터넷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또 그 결과를 네티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각 후보별 캠프 담당자와 포럼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조금이라도 네티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모두 '인터넷 대통령'과 함께 신나는 성탄과 새해를 맞게 되기를! KISO저널

< 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인터넷 정책 비교 >

분야	후보별 답변 주요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인터넷 경제/산업	● 인터넷 서비스 산업 강조	●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완화 ●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지원 ● 창업 활성화 지원
일자리 창출	● 인터넷 기술 및 전문 교육 실시로 인재양성	● 창업지원 및 정부주도로 교육 및 일자리창출
인터넷 정부	● 공공정보 개방·활용-‘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제정 ● 정부내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 디지털공공정보 개방 ● 온라인 정책 여론조사 추진
인터넷 문화 및 교육	● 정보격차해소, 미디어교육,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	● 자율적 프로그램 강조(정부주도 문화형성 부정적) ● 인터넷교육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
인터넷 정책추진 체계 및 전략	● ICT 전담부처 설치	● '인터넷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산업지원관 설치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해콘텐츠의 유통 및 확산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내 아동음란물 규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규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 창근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1. 들어가는 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417명(5820건)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아동음란물이 1758명(1411건)으로 2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형으로는 단순배포·전시가 952명, 영리목적 판매·대여 등 482명, 단순소지 275명, 제작 28명 등의 순이라고 한다.¹⁾ 이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아동음란물이 전체 인터넷 음란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이 음란 표현물의 대상이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것이지만 아동음란물의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된 정책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아동은 성적 표현에 등장시킴으로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또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란물에 대한 제작이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법제를 취하여 왔고, 아동음란물에 대하여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 그 규제법제를 최초 도입한 이래, 그 이후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죄의 처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벌 등으로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분은 2012. 9. 16.부터 최초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동 책임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의 방향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아동음란물의 금지 등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상 원리, 표현물의 배포자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부과 등 인터넷법 원리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아동음란물 법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음란물 규제의 연혁

가.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규제의 연혁

1) 연합뉴스 2012. 11. 8.자 보도(검색일자 2012. 11. 12. <http://news.nate.com/view/20121108n12380>)

아동음란물 규제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시작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형벌규제로 도입되었다. 원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99년경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청소년 원조고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 입법과정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규제도 동시에 취하게 된 것이다.

동법상 규제행위의 유형을 보면, 일반 음란물 규제법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망'을 통제함으로써 그 효과를 충분히 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한다. 형법에서 음란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행위를 벌하고(제243조), 그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행위를 벌하며(제244조), 공연 음란행위를 벌하고 있는 것이(제245조) 바로 그와 같은 예에 속한다. 아동음란물 규제도 일반 음란물 규제와 마찬가지로 공급의 통제를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 이후 동법은 수회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7년 도입이다. 그 이전까지는 판매·대여·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매 등의 목적이 없이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공급의 통제에서 수요의 통제로 아동음란물 규제법제를 확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와 공급 양자를 모두 틀어막음으로서 아동음란물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음 중요한 변화는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도입한 점이다. 2011년 개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한 아동음란물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유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사책임주의, 죄형법정주의, 인터넷 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 아동음란물에 대한 해외 규제법제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 보호하고 있다. 아동 외설 및 포르노그래피의 거래를 방지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시각적 묘사에 관한 중개와 교사를 금지하고, 아동대상범죄를 조장하는 아동음란 및 포르노그래피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아동음란물 및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은 「통신품위법」의 일부조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자 제정된 것으로서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은 인터넷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나

공공도서관에게 인터넷의 안정성 정책과 기술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엄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체계로 되어 있을뿐 우리나라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兒童賣春、兒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處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에서 아동음란물의 반포,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입법례이다.

3. 온라인상 아동음란물 규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동음란물 개념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아동을 필름이나 비디오표, 게임물 등에 등장시켜서 음란행위를 표현한 것을 말하고, 매체형식은 그림이나 글, 영상물, 게임물 등은 물론이고 통신매체를 통한 일체의 표현물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법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5호).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4가지(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표·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음란물은 우리법제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에서는 아동음란물이라고만 함)로 정의되어 있는데, 2000년 최초 도입시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되었다가 이후 2009년 개정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법률명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청소년의 범위가 19세 미만 일체를 일컫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연령대의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부르는 것보다 아동으로 지칭하는 것이 보다 적확하다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아동음란물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아동음란물에 실제인물인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한 음란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2011년 개정에서 아동음란물의 대상에 실제의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아동음란물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실제 아동은 아니지만 아동으로 묘사되는 표현물도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전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한 표현물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음란물은 일반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제하여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즉 규제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단과 방법상 적절한 지는

의문이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둘째, 현행법상 아동음란물은 아동 등이 성교행위 등 4가지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 중에는 그 정도에 있어서 음란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물 정도의 표현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과잉규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초 2000년 법에서는 ‘음란물’로 한정하였던 연혁을 보더라도, 이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아동음란물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음란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표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한 청소년유해물로 규제를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단순소지죄

현행법 제8조 제4항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즉 단순소지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을 한다. 이 범죄는 2007. 8. 3.일자 개정시에 “청소년을 음란한 장면의 출연자로 하여 청소년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²⁾ 형법상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편 등의 소지(제205조), 전시폭발물소지(제121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소지죄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단순소지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지의 특별한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없이도 그 유해성이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음란물은 아편이나 전지에서 폭발물과 유사한 정도의 유해물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동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이미 벌하고 있는 사정에서 단순소지죄까지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다.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 음란물의 제조나 유통 등 공급측면에서의 통제가 수요자의 통제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칫 별다른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동음란물의 유통을 단속한다는 명분하에 전 인터넷 이용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결과를 가져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지의 경위는 그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여기서 소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다.³⁾ 컴퓨터에 저장된 행위를 소지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보는 행위는 소지가 아닌지, 또한 저장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임시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경우와 하드에 저장될 경우 소지의 관념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의문이다. 또한 단순소지의 경우에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해당 소지에 대한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형사법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영리 목적으로 대여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벌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같은 영리 목적이 없는 대여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유해성이 강한 공급 측면은 배제한 채 수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처벌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국회 정무위원회(2007.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4면

3) 실제 국회 입법논의 중에도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보충성에 위배되고 단순 ‘소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최형법정주의의 위배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 심사보고서, 27면.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형사법적인 측면과 인터넷법적인 측면 2가지 점으로 문제를 요약할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⁴⁾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 또는 발견된 아동음란물을 삭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법상 직접 범죄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책임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의 발견이나 삭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동음란물 유통 등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범죄의 핵심은 아동음란물의 유통 등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예방이나 삭제 등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이 되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사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며, 발견한 아동음란물을 삭제, 전송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면책사유로서 규정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거나 전송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인터넷법리상 다음의 문제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이용자가 상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제1호), 온라인자료의 특징이나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인식하여 찾아내는 조치(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제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니터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정보를 삭제하는 법리 즉 'Notice and Take-down' 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저작권법 제103조).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102조 제103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의무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물론 아동음란물과 불법저작물이나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의 유해성이나 피해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상의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이나 본질에 반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4. 마치는 글

아동음란물의 범람을 통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긴박·절실함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4) 자세한 내용은 황정근(2011),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KISO저널, Vol5, 23-24면 참조

없지만, 문제는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규제정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은 신문, 책, 그림, 영화 등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이고 발전진행형의 문화체계에 해당되며 종합매체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런 점에서 인터넷규제의 문제는 단순한 한 종류의 매체의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보사회의 문화체계 전체에 대한 규제체계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거듭 신중하여야 한다.

아동음란물의 개념은 점점 확대되어 오고 있으며, 그 책임의 부과 범위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새로운 책임주체가 등장하기도 한다.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규제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오로지 목적만이 정당하다고 하여 수단과 방법, 이익균형 등의 비례성 심사를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아동음란물에 관한 현행법 체계는 연혁적으로 보거나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 KISO저널



인터넷 정치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유형과 특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 포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각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선 특집페이지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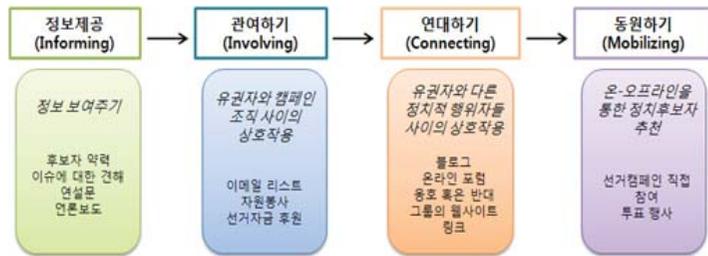


장우영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포털의 대선 특집 서비스 비교 분석

1. 선거에서의 포털의 역할

주지하듯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권력획득의 유일한 합법적 원천이다. 대의정치집단에 대한 불신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경쟁은 더욱 공고하게 제도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정치에 등장한 미디어는 박진감을 불어넣으며 건조한 선거 경쟁을 민주주의의 축제로 탈바꿈시켜왔다. 그렇지만 매스미디어는 정보생산자 집단의 독점, 게이트키퍼(gate-keeping), 단방향 소통구조로 인해 유권자를 수동적 청중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뉴미디어의 등장은 후보와 유권자 간의 융합적인 선거캠페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그 동안의 웹캠페인은 후보와 유권자 간의 접촉 밀도를 크게 진작하며 참여지향적 선거문화를 일구어왔다.



▲ <그림 1> 웹캠페인 발전 모델

슈나이더와 풋(Schneider & Foot, 2006)에 따르면, 웹캠페인은 다음의 네 단계로 발전하며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다. 첫 단계는 '정보제공(informing)'으로 후보 및 정책 PR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단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후보 및 정책 관련 정보를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둘째 단계인 '관여(involving)'는 후보 웹사이트 방문자와 캠페인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용 행태 특성을 파악한 뒤,

이메일 리스트에 가입·자원봉사 참가·선거자금 기부를 촉진한다. 셋째 단계는 '연대(connecting)'로서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유관 또는 우호 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지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창구로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방문자들이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포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마지막 단계인 '동원(mobilizing)'은 지지자들이 다른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또한 후보 및 그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동원의 주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태도를 형성하여 표를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다(장우영·민희·이원태, 2010).

그렇다면 웹캠페인에서 포털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우선 포털이 명실상부한 온라인공간의 정주지라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에서 인터넷 이용의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다. 포털 중심의 인터넷 이용 행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쟁론이 구구하지만, 그만큼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포털의 순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사회적 공공성과 공동체의 편익이 증대할 소지는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포털의 대선 특집 페이지 서비스(이하 '대선 특집')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배양하는 공익적 성격이 명료하다.

다음으로 포털은 공론장(public sphere) 서비스를 통해 참여문화와 여론형성을 고무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뉴스제공과 토론공간을 연계한 포털 공론장을 매개로 선거, 정치과정, 사회운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렇듯 시민들이 콘텐츠 생산을 통해 직접 의제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브런스(Bruns, 2005)는 이슈공중(issue public)을 프로유저(producer)라고 정의한다. 프로유저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독립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이를 사회의제로 확산시키는 역의제설정(reverse agenda setting) 효과를 내고 있다(장우영, 2012). 더욱이 웹캠페인은 연대와 동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 특집과 같은 포털의 선거참여 플랫폼은 유권자 참여의 질을 높이고 투표율을 진작시킬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2. 포털의 대선 특집 서비스 개관

가.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10월 18일에 웹과 모바일 상에서 대선 특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동 서비스와 관련해서 네이버는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의 세 원칙에 의거한 대선 편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검색어 서비스를 검증받아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색어 서비스 운영 절차와 처리 내역을 담은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검색어의 유입 시기와 등록 순위 등을 공개하고 정치 검색어에 대해서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서비스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대선 특집은 뉴스, 대선 트렌드, 후보, 정책 2012, 투표·개표, KBS 스페셜의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선 출은 오늘의 이슈, 이슈 타임라인, 대선 뉴스 브리핑, 여론조사, 후보 정책 비교, 역대 대선 결과 등 주요 서비스 내용을 개관하고 있다. 그밖에 후보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으며, SNS 핫 키워드와 후보 메시지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대선 특집의 섹션별 주요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섹션에서는 주제별 뉴스, 이슈 타임라인, 뉴스 갤러리, 날짜 별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선 트렌드 섹션에는 SNS 동향, SNS 인기 뉴스, 여론조사가 하위 코너로 구축되어 있다. SNS 동향에서는 실시간으로 SNS 상의 키워드들과 후보별 미디어 점유율 및 SNS 인기글이 제공되고 있으며, SNS 인기 뉴스에서는 많이 인용되는 뉴스와 트윗이 제공되고 있다. 여론조사 섹션에서는 다자 및 양자 간 후보 지지율, 투표시간 연장 여부, 아권 단일후보 적합도, 후보의 정책, 대선 변수, 정권재창출 대 정권교체, 대선 쟁점 등에 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네티즌 의견개진인 가능한 것이 특징일 만하다. 후보 섹션에서는 각 후보들에 대한 신문기사, 지지율, SNS 키워드, 핵심 공약 및 후보에 대한 응원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 2012 섹션은 곧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투표·개표 섹션은 투표일인 12월 19일 선거일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KBS 스페셜 섹션은 KBS와 연계하여 일명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 콘서트라는 제하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그림 2> 네이버 대선 특집페이지

나. 다음

다음은 올해 10월 12일에 웹과 모바일 상에서 대선 특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다음은 서비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시물 정책위원회 외에 미디어위원회를 개편하고 외부 옵무브먼 기구인 열린이용자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디어위원회 활동은 편집에 대한 내부 편집 가이드를 마련하고 미디어

미디어 서비스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카페, 블로그, 아고라, 댓글, 검색서비스 등에서 불법·유해 정보는 계시물정책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음의 대선 특집은 뉴스, 여론조사, 후보, 후보VS후보, 이슈맵, 말말말, 선거정보의 7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약속 1219, 정치후원금, 대선토론평방을 별도의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섹션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대선 출은 후보들에 관한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과 여론조사, 후보들의 주요 발언, 사진 이미지, 아고라 토론, 구독과 댓글이 많은 대선 뉴스, 소셜픽,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주요 뉴스를 게시하고 있다.

다음 대선 특집의 섹션별 주요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섹션은 주요 뉴스, 실시간 뉴스, 일자별 언론사별 뉴스와 인기 기사, 후보들의 포토갤러리, 전체 기사 등의 하위 코너들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뉴스의 경우 대선 뉴스 키워드와 당일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인기기사는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여론조사 섹션은 후보별 지지율, 양자 가상대결, 후보 단일화, 지역·연령·성별 지지율 정보와 함께 네티즌 의견개진 게시판이 구축되어 있다. 후보 섹션은 후보 명단과 정보 및 예비경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보 VS 후보 섹션은 후보들의 신상정보를 비롯해서 지지율, 인생 타임라인, 여론조사, 공약, 말말말, 뇌구조, 재산 감쪽 비교 등 광범한 내용을 후보 상호 간에 비교하고 있다. 이슈맵은 실시간으로 트위터에서 유통되는 핵심 단어들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에 대해서는 후보별 트윗 비율과 실시간 리트윗 현황을 보여준다. 말말말에서는 이슈맵 후보들의 발언록을 보여주고 있고, 선거정보 섹션에서는 선거 일정 및 역대 대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3> 다음 대선특집페이지

다. 네이트

네이트는 올해 10월 16일 대선 특집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1월 27일 2차로 특집 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네이트는 대선 특집 페이지 서비스에 앞서, 포털 3사 최초로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2012대선 편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선 이슈 관련 지역감정/색깔론 등 정치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기사 노출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책분석과 검증 보도자료 위주로 적극 노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위정보와 악성투머에 대한 대응으로 내부 점검 인력을 증설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이버수사대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네이트의 경우에는 대선 홈 섹션에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대한민국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선 홈은 언론사의 주요 뉴스, 후보별 정책, 여론조사, 핫이슈, 주요 트위터 메시지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이트 대선 특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코너는 대선 핫이슈이다. 핫이슈는 주요 뉴스, 주요 및 기타 후보, 공약점검, 여론조사, 대선 화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명선거 캠페인의 경우 '공명선거 함께해요'와 '투표소에서 만나요'라는 하위 코너에 동영상 홍보물과 지역별 현황을 게시하여 투표독려를 촉진하고 있다. SNS 서비스도 특기할 만한데, 주요 이슈들을 분류하여 관련된 트윗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어 쟁점과 여론 동향 파악이 용이하다.



▲ <그림 4> 네이트 대선 특집페이지

3. 포털의 대선 특집 서비스 비교

네이버 대선 특집은 다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후보별 미디어 점유율을 제공하고 있다. 점유율은 뉴스와 SNS를 종합하여 산정됨으로써 후보의 여론 노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SNS 핫 키워드와 인기글을 제공함으로써 소셜스피어(social sphere)에서의 실시간 여론 동향을 관측할 수 있다. 특히 후보별 SNS 키워드가 함께 제공되어 후보가 제기하는 선거 이슈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 등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독성이 높은 대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선 홈의 여론조사와 정책 비교는 인포그래픽 효과가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KBS 스페셜 메뉴의 투표독려는 대중적 소재(개그콘서트)와 동영상 접목시킴으로써 젊은층 투표참여의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대선 특집은 다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양강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비교

콘텐츠가 매우 인상적이다. 박근혜VS문재인 메뉴의 경우 양 후보 관련 기본정보, 정책, 여론조사는 물론 소유 차량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비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과 반응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대결 구도를 반영하여 양강 후보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를 증대한다. 셋째, 3대 포털 중 처음으로 독립된 페이지로 정치후원금 메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기부자의 이름으로 직접 각 후원회에 전달되며, 각 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넷째, 지지선언 메뉴를 통해 유권자가 본인의 프로필과 함께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표출할 수 있다. 다음 대선 특집은 합리적인 지지 결정을 위해 후보 선택 도우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27일 정오 현재 475,270 명이 이 도우미 콘텐츠를 활용하고 13,768명이 지지 선언에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네이트 대선 특집은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한 페이지에 대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핵심 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인물 중심으로 대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핵심코너인 '대선 핫이슈 코너'에서는 박근혜와 문재인 섹션을 특화하여 최근 행보, 캠프소식, 관련 정책 등 선거운동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네이트 뉴스의 강점인 베스트 리플 기능을 살려, 각 후보자의 화제 발언에 따른 네티즌 반응을 베스트 리플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놓았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주요 메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선 홈 -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대선 뉴스 브리핑, 그래픽으로 보는 대선, 대선 만평, 역대 대선 결과 2. 뉴스 3. 대선 트렌드 - SNS 메시지, SNS 인기뉴스, 여론조사 4. 후보 - 후보 등록 후 서비스 예정 5. 정책 2012 - 후보 등록 후 서비스 예정 6. 투표·개표 - 선거일에 서비스 예정 7. KBS 스페셜 - 대선 콘서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선 홈 2. 뉴스 3. 여론조사 4. 후보 5. 후보 VS 후보 6. 이슈 맵 - 일자별 트위터 메시지 분석 데이터 산출 7. 말말말 - 후보 이슈별 주요 발언 시각화 8. 선거정보 9. 정치후원금 10. 지지선언 11. 대선 토론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선 홈 - 뉴스, 이슈별 트위터 글, 여론조사 제공, 대선 핫이슈(주요뉴스, 새누리 박근혜 후보, 민주 문재인 후보, 기타후보, 공약점검, 여론조사, 대선 화보)
특기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별 미디어 점유율 제공 2. SNS 핫 키워드와 인기글 제공 3.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 등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 대선 정보 제공 4. KBS 스페셜 섹션을 특화한 투표독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 후보와의 꼼꼼한 비교 분석 2. 후보별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과 반응 제공 3. 포털 3사 중 처음으로 정치후원금 코너 개설 4. 후보 도우미 콘텐츠를 활용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지지 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페이지 안에 대선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2. 후보의 인물 중심으로 정보 제공 3. 베스트 리플 기능을 활성화해서 네티즌 반응 촉진

▲ <표 1> 포털 대선 특집 비교

종합하자면 포털의 대선 특집은 공통의 메뉴와 차별화된 메뉴를 적절히 배합하여 새로운 웹캠페인 기제로 역할하고 있다. 그동안 웹캠페인이 주로 후보와 정당에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대선 특집

콘텐츠도 인터넷, 기성 언론, SNS를 망라하여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왕성한 의견교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선 특집의 투표독려 캠페인은 참여 정치문화와 유권자 책무감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포털 대선 특집이 향후 선거에서도 정착되고 경쟁적으로 다변화된다면 사회적 공익 효과 또한 더욱 커지리라 전망된다. KISO 저널



[참고자료]

장우영. 2012. "온라인 공론장과 정치참여: 2008년 총불시위에서의 아고라." 『한국정치연구』 21(1). 1-26.
Bruns, A. 2005. Gatewatching: Collaborative Online News Production. New York: Peter Lang.
<http://media.daum.net/election2012>
<http://news.nate.com/election2012>
<http://news.naver.com/main/president2012/index.nhn>

온라인 공간의 따돌림을 일컫는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률이 증가하고 SNS를 통한 '손' 안에서의 학교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유형과 피해현황, 예방을 위한 과제 등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조희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청소년의 학교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은 사이버상의 왕따와 괴롭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대표적 역기능인 '사이버불링¹⁾' 혹은 '사이버 왕따'는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 따돌림과 차이가 있다.

사이버불링을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통과역례라고 하기에는 점점 규모와 강도가 깊어지고 그에 따른 자존감과 자부심 저하, 두려움과 불안감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2000년 뉴햄프셔대학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현황조사와 사회적인 예방책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피해현황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내의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유형, 피해현황, 특징과 쟁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하여,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이버 불링의 유형과 현황

가. 사이버불링의 유형

불링(Bullying)은 직접적·관계적·간접적 형태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불링과 사이버불링이 결합되는 멀티 형태의 불링도 보고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보통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 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1)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괴롭힘, 폭력, 따돌림, 왕따 등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번역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이버불링이라고 그대로 표현하기로 한다.

퍼뜨리기, 동성애자라고 폭로하기,²⁾ 휴대폰으로 음해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이 있다. 언어폭력(악성 댓글), 따돌림, 왕따, 괴롭힘(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문자), 위협 및 협박, 금품 갈취(사이버머니, 아이템, ID), 동영상 촬영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노출 등 사이버불링은 주로 언어적,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확대	루머/배척	사이버불링	물리적 폭력
바보	임신 등 엉터리 소문	페이스북 등 아이디 도용	구타
약하다	집단따돌림	루머, 악성댓글	다리걸어 넘어지게 하기
똥똥하다	웃과 스타일	동성애자라고 폭로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따라다니며 노래로 조롱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휴대폰 악성 문자	몸으로 밀치기, 발로 차기
비방/협박	몰래 데이트	온라인 가십 퍼뜨리기	집단으로 공격

▲ <표 1> 불링과 사이버불링의 유형

* 자료 : Faris, Robert-Felmlee, Diane, "Social Networks and Aggression at the Wheatley School", CNN, 2011년 10월 14일, p.6.

나. 사이버불링의 피해현황

2011년 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교생 가운데 20% 이상이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고교생의 12~30% 정도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	안하는 편	보통	가끔 또는 자주함
놀림	61.1%	19.0%	19.9%
따돌림	70.7%	17.6%	11.7%
욕설	79.6%	11.8%	8.6%
나쁜소문퍼뜨리기	69.4%	18.8%	11.9%

▲ <표 2> 청소년들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 유형과 실태

* 자료 : 김경삼, "청소년들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 실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 왕따 진단과 해법 자료집」, 2011년 12월 15일, p. 17.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⁴⁾

한편,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안티(Anti) 카페는 한국적 사이버불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 카페만 해도 1,000여 개가 넘는 실정이다.⁵⁾ 이 외에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등의 현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불링 사례에 해당한다.

2) 외국에서는 성적 성향 때문에 불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3) 한국정보화진흥원,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 진단과 해법], 2011년 12월 15일.

4) 사이버불링연구센터(www.cyberbullying.us)의 조사결과

5) "동급생 안티카페만 1,000여 개 달래, 사이버불링 방지 핫라인 구축해야", 「문화일보」, 2011년 11월 28일자.

3. 사이버불링의 특징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⁶⁾

가. 익명성

사이버불링은 누가 괴롭히는지 알기 어렵다. 휴대전화, 이메일, SNS 등의 사용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비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의 따돌림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해자이면서 다른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나. 상시성

과거에는 누가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메일, 휴대전화, SNS를 통해 24시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왕따 대응책 중 하나인 가해자를 피해 먼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사이버불링의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10대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없이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신속성

온라인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불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우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괴롭힐 대상에게 즉시 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확산성

사이버불링이 확산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온라인 상에 일단 한 번 게시된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날라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완전한 삭제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그만큼 더 크고 깊을 수 있다.

마. 시각적 충격

사이버불링은 녹화, 녹음 등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기능 때문에 시각적 충격을 동반할 수 있다. 과거의 낙서, 편지, 사진과 달리 생생한 동영상에 의한 충격이 피해자의 피해의식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6) "사이버 불링, 끈질긴 모욕 썰만 한 달새 10대 7명 자살", 「문화일보」, 2010년 10월 8일자.

4.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과제

가. 피해자 구제 전용 핫라인 구축

피해 학생이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족부에서는 #1388로 신속한 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⁷⁾

이와 같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⁸⁾

나. 사회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미국에서는 전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미국 불리 경찰(Bully Police USA, www.bullypolice.org)'이 결성되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불링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매해 10월을 '전국 불링 방지의 달'⁹⁾로 정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불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다. 인터넷 바르게 사용하기 교육 강화

국내 초등학교생 중 34%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악성댓글을 달고 있고, 초등학교생 28%는 악성댓글을 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고생의 65.1%는 악성댓글을 다는 것을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피해는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나의 댓글이나 사이버상 행동이 친구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절름발이형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나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비롯하여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라. 정확하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초 최초로 「2012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¹¹⁾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일부분으로 사이버불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이 야기하는 피해의 규모와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학교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7) #1388 서비스는 2007년 3월 시작한 세계최초의 모바일 상담 시스템으로서, 2011년 한 해 동안 15만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다.

8) 페이스북은 2011년 말부터 친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발견한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여 페이스북에 신고하면 글을 쓴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핫라인으로 전문 상담사와 통화하거나 비밀채팅을 하도록 권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9)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비영리기관인 페이스 센터(PACER Center)는 '불링을 반대하는 페이스 아동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전국 불링 방지의 달'을 만들었다.

10) "초등생 34%, 스트레스 풀려고 악성댓글", 「파이낸셜뉴스」, 2011년 12월 5일자.

마.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의 경우, 2000년 뉴햄프셔대학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현황조사와 사회적인 예방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2011년 초부터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안들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 전체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2011년 11월 기준 이미 46개주가 반불링 법(anti-bullying laws)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힌두자와 패친(Sameer Hinduja & Justin Patchin)의 조사연구¹²⁾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반불링 법안을 갖고 있는 주는 46개주이며('11.11기준), 처벌 수준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주가 10개주, 학교수준의 징계 규정이 39개주, 반불링 학교정책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있는 주는 45개주로 나타나고 있다. 불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규정한 법률이 보편화되어 있어 온라인 괴롭힘을 처벌하는 주는 35개주에 달하지만, 사이버불링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10개주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여러 곳의 주의회 수준에서 불링 관련 법률과 별개로 사이버불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불링 관련 별도 조항을 둔 주는 2010년 7월에는 5개주였는데 1년만에 10개로 늘어났으며, 주법에 대한 수정 입법안이 제기되어있는 주가 12개 주가 있을 정도로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적 대응책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11년 4월부터는 전국적인 라디오 네트워크(NPR, National Public Radio)에서 사이버불링 관련 법안 찬반이 가장 뜨거운 토론 주제로 떠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불링법	입법(수정)안 처리중	사이버불링 조항포함	온라인 괴롭힘조항	형사처벌	학교처벌	학교정책 공시 의무
2010.7	44	12	5	30	7	37	42
2011.11	46	12	10	35	10	39	45

▲ <표 3> 미국내 사이버불링 관련 입법 동향(2010년과 2011년 비교)

* 자료: "사이버 대응에 대한 두 가지 대응책: 미국의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 왕따 진단과 해법 자료집』, 2011년 12월 15일.

사이버불링의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간에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링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2년 4월 20일.
12) Sameer Hinduja & Justin Patchin, State Cyberbullying Laws, 2010., p. 1.
http://www.cyberbullying.us/Bullying_and_Cyberbullying_Laws_20100701.pdf

5. 맺음말

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역기능으로서 사이버불링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며, 피해양상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많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이후의 사회생활에서도 부적응의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상의 왕따나 괴롭힘보다 밝혀내기 힘들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KISO 저널)



학술 탐방 코너에서는, 국내외 IT 관련 주요 학술 모임에 관한 활동 소개를 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사회·기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있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한국정보사회학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정보사회의 성장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배 영 교 수
서울대학교
정보사회학과
(한국정보사회학회이사)

한국정보사회학회 활동 소개

1. 개요

융합과 혁신, 그리고 소통을 주요한 가치로 하는 한국정보사회학회(회장 KAIST 남찬기 교수)는 1999년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사회학회는 기존의 대부분의 학회가 하나의 특정 분야 및 학문에 한정되어 구성이 이뤄져 온 관행을 과감히 깨고 정보기술과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제 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사회학, 정치학, 언론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와 함께 경영학 및 공학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통한 사회적 실현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그림 1> 2012년 하반기 연례학술대회 모습

2. 주요 활동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1999년 “정보사회의 전망과 사이버 스페이스”를 주제로 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전후기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서도 천착해왔다. 그동안 진행된 학술대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지식정보사회의 철학과 비전”,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한국사회”, “모바일 환경의 진화와 사회적 과제”, “글로벌시대 한국사회의 IT 역량 진단”,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의의” 등 학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학술대회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생 세션을 마련하여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함께 향후 지속적인 학회 발전을 위한 토양의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 창립 시점부터 발간되어 온 학회지인 ‘정보와 사회’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제시하는 장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현상에 대한 학습자료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된 기술적 ‘결과’인 동시에, 다시 새로운 차원의 정보환경과 정보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원인’으로서 작용되고 있는 독특한 순환적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 등 사회 제 영역에 있어서의 운용원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갖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제 영역의 총체적인 결합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의 단계적 의미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과 결과로 가능해진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과 분석, 그리고 종합의 의의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보사회학회는 현재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기술정보사회의 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합성을 갖는 연구주체의 발굴은 물론 연구 분야의 확대를 통한 내적 역량의 강화와 함께 외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정보사회 연구의 주축 학회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다.

〈2012년 학술대회 내용〉

2012년 전기 학술대회: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의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대학원생 세션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플래밍 현상과 공문장의 가능성	김정연(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김가영(카이스트 대학원 석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뉴스 비교 분석	김정환(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세션1: 빅데이터와 거버넌스	빅데이터의 사회적 이용	송길영(다음소프트 부사장)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활용	이만재(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특임연구위원)
	빅데이터와 거버넌스	조화순(연세대 교수) 민병원(이화여대 교수) 조은일(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세션2: 빅데이터와 네트워크의 미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	김성륜(연세대 교수)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미래	김성철(고려대 교수)
	네트워크 정책의 미래	권영선(카이스트 교수)
2012년 후기 학술대회: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소셜미디어의 의미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대학원생 세션	사례를 통해서 본 커뮤니티의 내적동학과 자율규제	KISO 대학생 유져보드
	The Impact of the litigation on the shareholder value in IT industry	남상준(카이스트 대학원 석사과정)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재윤 · 김정환(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세션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소셜미디어	표현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시론: 미국 선거에서의 정치게임과 정치패러디를 중심으로	KISO 대학생 유져보드
	SNS와 집단의 변화	최항섭(국민대 교수)
	SNS와 문화소비의 변화	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
세션2: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부의 역할	2030년 인터넷 용어사전과 시나리오 그리고 초연결 IT 창조국가 전략	하원규(ETRI 연구위원)
	정보통신산업의 과제와 정부의 정책방향	권영선(카이스트 교수)
	전자정부의 미래와 행정의 변화	정충식(경성대 교수)

KISO 저널



「인터넷, 그 길을 묻다」



박준석 팀장
Daum
고객서비스기획팀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한국정보법학회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지은 것으로, 한국 인터넷이 가진 법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현안을 총망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망 중립성, 표현의 자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인터넷, 클라우드 등 한국 IT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총8개의 대 분류에 나눠 담았다. 「제8장 인터넷의 미래」는 40여명 집필진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기 위해서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질문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묶어놓았다.

법제도의 관점에서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이 책의 큰 줄기는 2012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담론이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규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을 인용하여 거버넌스의 의미를 되짚는 대목이 있다.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점이지 쇠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중략)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중략)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마음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정부가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산업세계의 정권들, 정부가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망 중립성,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제8장 인터넷의 미래」에서 7번째 질문 “10년 후에는 망 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 있을까요?”에 대한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대목이 있다. “망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본성 내지 이를 이용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본성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성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논의의 장은 현재의 거버넌스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인터넷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성격을 고려한, 규제와 자율의 조화가 더해진다면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의 결론이 담겨져 있었다.

책에서 주장하는 익명성, 표현의 자유 등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책에서 언급했듯이 ‘실명제’는 위험판결이 나면서 실제로 폐지되었다.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차단 도구였다. 한국에서 ‘실명제’의 실효성 유무를 다룰 때에 해외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제4장 인터넷과 보편적 미디어」 중 「SNS 등 최신 미디어와 관련된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에서는 SNS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SNS는 온라인 이용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은 스팸머(spammer),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고, 네트워크가 없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전파시키기 어렵다. SNS가 활성화된 이후 해오는 물론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들도 일명 ‘소셜 댓글’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댓글을 작성할 때에 본인의 SNS와 연계함으로써 댓글에 신뢰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타인을 사칭하는 사례와 같이 SNS를 악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심각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과도한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목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익명성’의 폐해를 우려하여 법제화된 사후 조치가 바로 ‘임시조치’ 제도이다. 책에서 주장하는 ‘임시조치’의 현실은 아래와 같다.

“연간 10만여 건의 게시글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피해주장 또는 피해에 관한 단순한 소명만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이 임시조치제의 현실이다. 임시조치제가 도입될 당시에 제기된 우려, 즉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선호함으로써 사이버언론에 대한 과잉억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비대한 포털 권력에 전능한 검열권을 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임시조치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적절한 게시글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단순한 소명만으로 영구히 삭제된다는 점이다.(중략) 2010년 1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된 게시글의 복원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 596건의 사례 중 25건에 대해서만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으므로(심의건수 대비 4%), 이 수치를 단순 대입하면 임시조치된 게시글 중 96%가 타인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적법한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가 인터넷에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적인 논쟁사안이므로 거의 대부분 명예훼손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게시글이 단지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언급이 있고 해당 공직자 등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임시조치된 많은 사례를 보면, 임시조치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폐해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중략) 그럼에도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임시조치’ 제도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실제 심의 후 시정요구된 것이 4%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명예훼손 관련 법으로 다루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책에서는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으며 결론을 짓는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법안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표현이 광범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4장 인터넷과 보편적 미디어」에서 「인터넷과 명예훼손, 모욕」, 「인터넷과 정치적 기본권」을 다룬 두 분의 집필자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불온통신’ 위헌결정 판결이 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는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

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불온통신’ 위험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방론을 인용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이 규정하는 불법정보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인터넷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보면, 각자의 방향성은 다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 책을 관통하는 줄기는 ‘거버넌스’이다. 인용하면, “정부가 중심이 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상명하달식 통치의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특정의 공유된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운영방식”이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갈 길을 모르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책은 각 주제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안을 담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집필자들의 바람이 담긴 듯한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 바람대로 과거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해답을 찾는 데 이 책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KISO 저널



「잊혀질 권리」

-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망각에 대한 문제



황 호 영 교수
한성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문득 10년 전에 찍은 자신의 사진을 접했을 때, 새삼 그 시절의 젊음에 놀라고 또한 유행이 지난 촌스러움에 세월을 실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기억조차 변한다고 한다. 한 때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나 덜 숙성된 발언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원형과는 다른 아스라한 기억으로 남는다. 하지만, 무심코 인터넷과 SNS에 올렸던 글과 사진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기억장치에 보존되어 망각의 혜택에서 벗어난다. 디지털 기억은 사진과 같이 정지되어 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나, 이를 내가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한 망각 없이 변화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연구소 교수인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의 저서 [잊혀질 권리]¹⁾는 이 질문에 대한 의미있는 문제제기이자 진지한 모색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검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망각'과 '기억' 사이의 균형관계가 역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논의의 선두그룹은 '문제의 인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 단계를 지나 '변화를 위한 실천'의 단계로 들어간 듯하다. 제일 앞선 부분은 놀랍게도 법 분야이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일 늦게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이미 기존 프라이버시권의 확장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헌법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후속 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는 2012년 1월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이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²⁾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질 권리는 아직도 초기 문제인식의 단계이며, 그런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열심히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하고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미처 인식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생활에 가깝고 절박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다.

이 책 [잊혀질 권리]를 읽는 첫 번째 가치는 '문제의 인식이 해결책의 첫걸음'이라는 율긴이의 말에 요약되어 있다.

1)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구본권 옮김,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2) 고은별, 최광희, 이재일,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 인터넷윤리학회지 특집호, 한국정보과학회/한국인터넷윤리학회, pp.34-41, 2012. 10

저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기억의 피해를 지적한다. 장난삼아 올린 사진을 SNS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교사 임용을 거절당한 사례나 30년 전에 썼던 논문의 한 구절 때문에 입국이 거절당한 사례 등을 통해, 수많은 웹 사이트와 정보 공유 사이트에 가입해있고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현대인들에게 망각이 기억으로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기 쉽게 지적한다.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문제의 인식에서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디지털 금욕주의,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 기술적 인프라, 인지적 조정, 정보 생태계, 완벽한 맥락화 등 규범적, 법률적, 기술적 메커니즘을 적용한 여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다시 망각의 미덕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보 만료일'의 도입을 주장한다. 과연 저자가 제시한 정보 만료일의 설정이 실질적인 방법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논의의 과정을 통해 독자로서 하여금 문제 인식 이후의 단계로서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훌륭하다. 책의 내용 중 문제 인식과 대안 사이를 이어주는 방법으로 망각과 기억의 개념과 역사를 논하는 부분도 진지하다.

최근의 여러 논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의 보호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과 대응방안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유된 게시물, 사진, SNS 대화, twit, 언론기사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대응방안이 모호하며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사이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디지털 기억이 정보주체의 사회적 인격을 결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앞서 말한 망각과 기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기의 개인에게 미래의 사회적 인격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의 인식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 책 [잊혀질 권리]는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리더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읽을거리지만, 연필로 쓰는 것보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을 먼저 배운 디지털 세대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고 그 부모들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KISO 제9호]

KISO NEWS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을 위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오픈

KISO는 지난 11월 14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매물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이용 증가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한 반면, 해당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일부 중개사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KISO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인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모네타, 부동산114 등 4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참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ISO저널



KISO NEWS

대학생 유저보드, 한국정보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KISO 대학생 유저보드 1기(김혜인, 박지후, 박향희, 최권일)가 지난 11월 30일 한국정보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자율규제 사례발굴 프로젝트인 ‘사례를 통해서 본 커뮤니티의 내부 동학과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KISO 유저보드가 첫 번째로 시도하는 자율규제 사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로서 직접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사하고, 독립 커뮤니티 운영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커뮤니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사례를 발굴하고, 원활한 자율규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날 토론을 맡은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이문형 교수는 “이번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커뮤니티의 자율규제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과 신선한 사례들을 발굴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율규제 사례발굴 보고서는 보다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의 보완을 거쳐 추후 KISO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KISO저널

